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와 ‘신체활동장려 사업’ 도입에 관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6719호, 2019. 12. 3. 공포, 2021. 12. 0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임.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중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 지역사회 금연홍보, 금연교육지원 업무만 규정되어 있어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을 근절하기 위한 지도·점검 지원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한편, 지방세법 제47조 제1호에 따른 담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60조의 담배의 구분 정의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2의 담배의 구분 정의를 일치시켜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강친화인증제도 도입 (안 제7조 신설)

1)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도입에 따라 구체적인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 세부기준 제시가 요구됨.

2)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친화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를 규정함.

나. 건강친화 인증위원회 설치 (안 제7조의2 신설)

- 1) 건강친화기업 인증 관련 사항의 심의를 위한 인증위원회 설치가 필요함.
- 2) 인증기준 검토 등 건강친화 인증위원회의 역할·구성·임기 등을 마련함.

다. 인증심사 비용 감면 (안 제7조의3 신설)

- 1) 인증심사에 필요한 비용부담 규정이 필요함.
- 2) 인증심사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게 하고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감면기준은 고시에 정하도록 함.

라. 건강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안 제8조 신설)

- 1) 건강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및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규정이 필요함.
- 2)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홍보·컨설팅·교육 등 지원 가능규정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토록 함.

마. 인증받은 기업에 대한 관리 (안 제9조, 안 제9조의2 신설)

- 1)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증받은 기업에 대한 관리 규정이 요구됨.
- 2) 인증유효기간의 연장, 인증 받은 기업이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조사 등을 규정함.

바.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확대(안 제16조의5제2항 및 별표 1의4)

- 1)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에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을 근절하기 위한 지도·점검 지원 업무를 추가함

- 2)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연을 위한 조치를 점검하기 위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위치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상태 확인 업무를
지원하고, 법 제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지정소매인의 영업소의 담배광고
의 전시·부착 상태 확인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사. 신체활동장려사업기본계획 수립 (안 제22조의2, 안 제22조의3 신설)

- 1) 법 개정으로 신체활동장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규정 마련이 필
요함.
- 2) 신체활동장려사업 기본계획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갈음하여 5
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신체활동장려사업실행계획을 수립하도
록 함.

아. 담배의 구분 정의 일치(안 제27조의2)

- 1)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담배 등에도 국민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예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담배의 구분 정의를 일치시켜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9조, 제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건강친화기업 인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기업”이라 한다)는 제3항에 따른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제7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6조의2에 따른 건강친화기업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1. 「상법」 제172조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회사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3장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4장에 따른 지방공단
3. 그 밖에 영리 목적 유무를 불문하고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단체

②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면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인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이 때 구체적인 심사항목과 심사항목별 배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경영방침 수립 및 조직·예산 편성 등 기

업 내 건강친화 경영의 적극도

2. 직원 건강관리, 근로 및 여가 시간 관리, 휴가·휴직 등 건강친화문화 및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의 이행정도 및 우수성
3. 기업 내 건강증진프로그램 실시 등 건강친화활동의 효과성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기준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기업이 인증을 받으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친화기업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건강친화경영 운영체계 개요
2. 건강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3. 그 밖에 건강친화경영 운영과 관련된 자료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친화기업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심사를 한 결과 인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친화기업 인증 업무를 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위탁한다.

제7조의2(건강친화 인증위원회의 설치) ① 인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친화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증기준 등 검토
2. 인증 심사결과의 조정 및 인증취소의 결정
3.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한 지원방안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증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③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인증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
2. 직업건강 및 산업보건 관련 분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 ·

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직업건강 및 산업보건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직업건강 및 산업보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다. 그 밖에 직업건강 및 산업보건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인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증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⑥ 위원장은 인증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인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인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⑧ 제7항 각 호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 ⑨ 위원 본인이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⑩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⑪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증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7조의3(인증심사 비용) ①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비용은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이 부담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건강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①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친화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2. 건강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3. 직장 내 건강친화 교육 실시
4. 건강친화 프로그램 보급 및 건강 관련 시설 개선 지원
5. 건강친화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프로그램 등에 대한 우선 참여 및 보상
7. 그 밖에 건강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

제9조(인증유효기간의 연장)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의2(인증의 사후관리)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이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6조의5제2항 중 “업무”를 “업무와 흡연 조장환경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 지원 업무”로 한다.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신체활동장려사업 기본계획 수립)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체활동장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체활동장려사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법 제4

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중장기적 목표와 추진방향

2. 다음 각 목의 신체활동장려 추진계획

가. 법 제16조의3에 따른 신체활동장려사업

나.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연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및 관리 방안

5. 그 밖에 신체활동증진정책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신체활동장려사업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법 제4조의2에 따른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2조의3(신체활동장려사업의 종류)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개인별 신체활동증진 서비스사업

2. 신체활동장려를 위한 홍보·캠페인 사업

3. 신체활동 친화적인 환경조성사업

4.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7조의2제1호 중 “잎담배”를 “연초”로, “것으로서 흡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담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니코틴”을 “니코틴이 포함된”으로, “사용해”를 “이용하여”로, “담배로서”를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로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잎담배”를 “연초”로, “만든 담배”를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담배”를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잎담배를 경가향”을 “연초를 경가향”으로, “만든 담배”를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가공처리된 담배”를 “가공처리된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형태의 담배”를 “형태의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만든 담배”를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1항제11호”를 “법 제25조제1항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체육활동”을 “신체활동”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사업

6. 음주폐해예방을 통한 건강증진사업

제32조제1항제6호 중 “체육활동”을 “신체활동”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건강증진을 위한 음주폐해예방 관련 업무

제33조제2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의2(종전의 제1호) 중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법 제34조제1항제1호의3”으로 한다.

1.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별표 1의4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흡연 조장환경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 지원	가.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연을 위한 조치를 점검하기 위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위치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상태 확인 업무 지원 나. 법 제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지정소매인의 영업소의 담배광고의 전시, 부착 상태 확인 업무 지원
----------------------------	---

별표 5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1호	200	300	500
--	--------------	-----	-----	-----

별표 5 제2호라목(종전의 나목)의 근거 법조문란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법 제34조제1항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법 제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	200	300	500
--------------------------------	-----------	-----	-----	-----

별표 5 제2호마목부터 아목까지를 [제1호의2](#) 각각 사목부터 차목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조(건강친화기업 인증) ① 다</u> <u>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u> <u>는 자(이하 “기업”이라 한다)는</u> <u>제3항에 따른 서류를 보건복지</u> <u>부장관 또는 제7항에 따라 보건</u> <u>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u> <u>탁받은 자에게 제출함으로써 법</u> <u>제6조의2에 따른 건강친화기업</u> <u>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u> <u>신청할 수 있다.</u> 1. 「상법」 제172조에 따라 법 인설립등기를 마친 회사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 관, 「지방공기업법」 제3장 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4장에 따른 지방공단 3. 그 밖에 영리 목적 유무를 불 문하고 「소득세법」 및 「부 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법인 또는 단체 ②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인 증을 받으려면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인증기준을 갖추어야 한

다. 이 때 구체적인 심사항목과
심사항목별 배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경
영방침 수립 및 조직·예산
편성 등 기업 내 건강친화 경
영의 적극도

2. 직원 건강관리, 근로 및 여가
시간 관리, 휴가·휴직 등 건
강친화문화 및 환경 조성
위한 제도의 이행정도 및 우
수성

3. 기업 내 건강증진프로그램
실시 등 건강친화활동의 효과
성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기준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기
업이 인증을 받으려면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건강친화경영 운영체계 개요

2. 건강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3. 그 밖에 건강친화경영 운영
과 관련된 자료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
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친
화기업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
청할 수 있다.

1.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증
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심사를 한 결과 인증을 하
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

<신 설>

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친화 기업 인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친화기업 인증 업무를 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위탁한다.

제7조의2(건강친화 인증위원회의 설치) ① 인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친화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증기준 등 검토

2. 인증 심사결과의 조정 및 인증취소의 결정

3.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한 지원방안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증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③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인증위원

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

2. 직업건강 및 산업보건 관련 분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직업건강 및 산업보건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직업건강 및 산업보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다. 그 밖에 직업건강 및 산업보건 관련 분야의 전문

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
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
다.

⑤ 인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
기 위하여 인증위원회에 간사 1
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
명한다.

⑥ 위원장은 인증위원회의 회의
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인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⑦ 인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
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
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
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

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
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
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
항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과 직접적인 이
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
항

⑧ 제7항 각 호 해당 안건의 당
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에 기피 신
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회의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
정한다.

⑨ 위원 본인이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⑩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위원
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⑪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증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신 설>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
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
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형법」 제303조 또는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
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7조의3(인증심사 비용) ①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심
사비용은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
이 부담한다. 다만,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에 대해서는 심사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 및

<신 설>

감면비율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건강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①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친화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2. 건강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3. 직장 내 건강친화 교육 실시
4. 건강친화 프로그램 보급 및 건강 관련 시설 개선 지원
5. 건강친화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프로그램 등에 대한 우선 참여 및 보상
7. 그 밖에 건강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 설>

<신 설>

제16조의5(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① (생 략)

② 법 제9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란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
교육 지원 업무를 말한다.

③ ~ ⑥ (생 략)

<신 설>

을 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

제9조(인증유효기간의 연장)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유효기
간은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의2(인증의 사후관리) 보건

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
이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인
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
할 수 있다.

제16조의5(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업무와 흡연 조장환경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 지원
업무----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신체활동장려사업 기

본계획 수립) ① 법 제16조의2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체
활동장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국
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체활동장려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법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중
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중장기적 목표와
추진방향

2. 다음 각 목의 신체활동장려
추진계획

가. 법 제16조의3에 따른 신
체활동장려사업

나.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연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및 관리 방안

5. 그 밖에 신체활동증진정책수
립에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
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
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

<신 설>

제27조의2(담배의 구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담배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궐련(卷煙): 잎담배에 향료 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폭으로 썬 후 궐련제조기를 이용하여

별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신체활동장려사업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법 제4조의2에 따른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2조의3(신체활동장려사업의 종류)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개인별 신체활동증진 서비스 사업
2. 신체활동장려를 위한 홍보·캠페인 사업
3. 신체활동 친화적인 환경조성 사업
4.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7조의2(담배의 구분) -----

-----.

1. ----- 연초-----

꺾련지로 말아서 피우기 쉽게 만들어진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흡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2.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이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사용해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로서 그 구분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나. (생 략)

3. 파이프담배: 고급 특수 잎담배를 증가향(重加香) 처리하고 압착·열처리 등 특수가공을 하여 각 폭을 비교적 넓게 썰어서 파이프를 이용하여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

4. 엽꺾련(葉券煙): 흡연 맛의 주체가 되는 전충엽을 체제와 형태를 잡아 주는 중권엽으로 싸고 겉모습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외권엽으로 만 잎말음 담배

----- 담배

2. ----- 니코틴이 포함된 -----

----- 이용하여 -----

-----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로서 -----
-----.

가.·나. (현행과 같음)

3. ----- 연초 -----

----- 만든 담배 및 이
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4. -----

-----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5. 각련(刻煙): 하급 <u>잎담배</u>를 <u>경가향</u>(輕加香)하거나 다소 고급인 <u>잎담배</u>를 가향하여 가늘게 썰어, 담뱃대를 이용하거나 흡연자가 직접 꺾련지로 말아 피울 수 있도록 <u>만든 담배</u> 6. 씹는 담배: 입에 넣고 씹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u>가공처리된 담배</u> 7. 냄새 맡는 담배: 특수 가공된 담배 가루를 코 주위 등에 발라 냄새를 맡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가루 <u>형태의 담배</u> 8. 물담배: 장치를 이용하여 담배연기를 물로 거른 후 흡입할 수 있도록 <u>만든 담배</u> 9. (생략) 제30조(기금의 사용) <u>법 제25조제1항제11호</u>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u>담배</u> 5. ----- <u>연초를 경가향</u>----- ----- ----- ----- ----- <u>만든 담배</u> <u>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u> 6. ----- ----- ----- <u>가공처리된 담배</u> <u>및</u> <u>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u> 7. ----- ----- ----- ----- <u>형태의 담배</u> <u>및 이와</u> <u>유사한 형태의 담배</u> 8. ----- ----- ----- <u>만든 담배</u> <u>및 이</u> <u>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u> 9. (현행과 같음) 제30조(기금의 사용) <u>법 제25조제1항제12호</u>----- -----
--	---

사업을 말한다.

1. · 2. (생 략)

3.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사업

4. (생 략)

<신 설>

<신 설>

제32조(업무위탁) ①법 제29조제2
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
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
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 5. (생 략)

6.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7. · 8. (생 략)

<신 설>

② · ③ (생 략)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생 략)

②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다.

-----.

1. · 2. (현행과 같음)

3. ----- 신체활동 -

4. (현행과 같음)

5. 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
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사업

6. 음주폐해예방을 통한 건강증
진사업

제32조(업무위탁) ①-----

---.

1. ~ 5. (현행과 같음)

6. ----- 신체활동---

7. · 8. (현행과 같음)

9. 건강증진을 위한 음주폐해예
방 관련 업무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신 설></u> 1. <u>법 제34조제1항제1호</u> · 제2호,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법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2. ~ 4. (생략)	1. <u>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u> 1의2. <u>법 제34조제1항제1호의3-</u> -- 2. ~ 4.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연 락 처	(044) 202 - 2821